

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

〈지난호에 이어〉

9. 과징금처분

9-1. 과징금 제도

- 가.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운영
- 나. 조업정지가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조업

9-2. 대상범위

- 가.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『주민의 생활, 신용·고용·물가등 국민경제 기타공익』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대상시설

-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
-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 난방시설
- 발전소의 발전시설
-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 시설
-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배출시설
- 제조업의 제조시설

다. 과징금 부과처분 제외대상(고의 또는 상습위반행위 제외)

-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
- 법제16조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법제15조 제1항 각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30일이상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

9-3. 과징금 부과기준

- 가. 과징금 금액 : 2억원이하

나. 과징금산정

조업정지일수 × 1일당 부과금액(300만원) × 사업장규모별 부과계수

※ 사업장별 부과계수

종별	1종	2종	3종	4종	5종
부과계수	2.0	1.5	1.0	0.7	0.4

10. 자가측정

10-1. 목적

- 가.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
- 나.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

10-2. 측정 방법

- 가. 자체측정 : 측정장비, 실험실등을 갖추어야 함
- 나. 위탁측정 : 측정대행업체에 위탁

10-3. 측정 항목

- 가. 배출허용기준 설정항목 중 해당항목
- 나.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과 사용한 “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”는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.

10-4. 측정 횟수

1종시설	2종시설	3종시설	그외 시설
주1회 이상	월2회 이상	매2월에 1회 이상	매반기 1회 이상

10-5. 측정의 예외

- 가. 매2월 1회 이하 측정하여야하는 시설 중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월2회 이상 측정

나.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배출되는 대기오염 배출시설로서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반기 1회이상, 여과집진시설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월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매2월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.

10-6. 대기분야 자가측정제도 준치사유

구 분	대 기 분 야	수 질 분 야
측정여부	의무사항	권장사항
배출시설	개별시설로 규정	공정단위로 규정
오염물질배출	시설별로 다양	폐수처리장에서 배출
시료채취	시료채취시 3~4시간 소요	채수가 용이
특 성	측정을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시설관리 곤란	가동상태 수시확인 가능

10-7. 자가측정의 실무

- 가. 매2월 1회 이하 측정하여야 하는 시설 중 일반오염물질과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특정유해물질에 대하여만 월2회 이상 측정하면 됨.
- 나. 자가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배출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법에서 규정하는 측정횟수를 준수할 수 없을 때는 관할행정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.

11. 환경기술인 임명

11-1. 목적

- 가.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
- 나. 환경기술인은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정함

11-2. 환경기술인 준수사항

- 가. 배출시설등을 정상가동하여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도록 할 것
- 나.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
- 다.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
- 라. 자가측정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
- 마. 자가측정에 사용한 여과지를 관리 보관할 것
- 바. 사업장에 상근할 것

11-3. 환경기술인 자격기준

1종	2종	3종	4종·5종
기사	산업기사	기사,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환경업무종사자	사업자 또는 피고용인 중임명한자

11-4. 환경기술인 겸임 등

- 가. 환경기술인이 각각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분야를 겸임할 수 있다.
- 나. 동일한 사업단지 등에서는 4개사업장(혹은 3개)까지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다.
※ 관련규정 :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7조
- 다. 환경기술인을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※ 관련규정 :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

11-5. 자격기준 예외규정

- 가. 4종 5종 사업장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.
- 나. 1종 2종 사업장중 일일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기술인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.
이 경우 1인은 3종사업장의 자격기준에 적합자로 대체할 수 있다.

※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내용

- ① 법제29조제4항 :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
 - 수질, 대기, 보건관리자
- ② 법제29조제5항 :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면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- ③ 시행령제12조제7항 :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대기와 보건관리자를 자격기준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1인 채용 가능 대기-수질 : 관련법에서 인정

- 다. 방지시설 설치면제(전체면제) 사업장과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5종사업장의 기술인을 둘 수 있다.
- 라. 일반보일러(소각보일러 제외)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의 기술인을 둘 수 있다.

자료제공 : 환경보전협회 환경연수부
다음호에 계속...